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베트남/하노이지사 작성)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베트남 라벨링 시행령(111/2021/NĐ-CP)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입 업체 혼란 야기
 - ‘21.12.09. 베트남 정부는 ‘22.2.15.부로 수입·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신 라벨링 규정을 공포한바 있음
 - 최근 베트남 세관 온라인 기사에 따르면,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해 수산물 수출입 업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힘
 - 라벨링 규정 1조 2항에 따르면, 식품 중 유일하게 라벨 부착이 면제되는 제품은 ‘내수용 신선 식품, 내수용 포장지가 없는 가공식품’으로 규정되어 있음
 - 따라서, 신 라벨링 규정에 따라 내수용이 아닌 가공수출을 위한 식품은 면제 대상이 아님

예시 1 : 내수용 가공식품의 원료(신선식품 및 미포장 가공식품)

- 박스에 포장된 냉동 어류 등이 해당되며, 신 라벨링 규정 따르면 박스가 아닌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
 - 내수용 제품이지만 ‘가공식품의 원료’ 이므로 면제대상 아님

예시 2 :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(신선식품 및 미포장 가공식품)

- 박스에 포장된 냉동 어류 등이 해당되며, 신 라벨링 규정 따르면 박스가 아닌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
 -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로 면제대상 아님

→ 수산물의 특성상 제품에 라벨을 부착할 수 없어 수출입 업체 애로

- 베트남 수산물수출자협회(VASEP)는 라벨링 규정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관총국에 공문을 발송하였음

2. 시사점

-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정된 라벨링 규정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현재 없으며,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KATI(www.kati.net)를 통해 안내 예정
-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,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

3. 출 처

- Doanh nghiệp gặp vướng về ghi nhãn đối với hàng thủy sản nhập khẩu. '22.03.04. Haiquan Online.
- công văn số 408/TCHQ/GSQL 및 Thông tư 05/2019/TT-BKHCHN

※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